

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

연간 근로소득

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(다만, 일용근로소득 제외)
 ※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「연봉」을 말함

(-) 비과세소득

- ▶ 실비변상적 급여
 - 자기차량운전보조금(월 20만원 이내), 연구보조비(월 20만원 이내),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
- ▶ 국외근로소득(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)
- ▶ 비과세 학자금, 근로장학금
- ▶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(연 240만원 이내)
- ▶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
- ▶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원 이내)
- ▶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
- ▶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

(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) ※ 총급여액은 의료비, 연금계좌, 월세액 세액공제·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

총급여액

(-) 근로소득공제

총급여액	공제액
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

(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) ※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

근로소득금액

(-) 인적공제

- ▶ 기본공제 : 근로자 본인,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)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나이요건 충족 필요,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)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

부양가족	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자매	위탁아동	수급자
나이요건	60세 이상	20세 이하	20세 이하 60세 이상	해당과제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	제한없음

- ▶ 추가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

요건	경로우대(70세 이상)	장애인	부녀자(부양/기혼)	한부모*
공제금액	100만원	200만원	50만원	100만원

*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(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)

- ▶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)의 근로자 부담금 : 전액 공제

- ▶ 보험료

· 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전액 공제

(-) 연금보험료공제

- ▶ 주택자금

·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% 공제 :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

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: 연 300만원~1,800만원 한도,

*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(2014.12.31.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)

(-) 특별소득공제

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	
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
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	

- ▶ 개인연금저축 : 2000.12.31.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% 공제(연 72만원 한도)
- ▶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: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(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, 1억 원 이하 300만 원,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)
- ▶ 주택마련저축공제 : 청약저축 ·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공제
- ▶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: 출자·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(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%, 5천만 원 이하 70%, 5천만 원 초과 30%) 공제(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하며,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▶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: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(전통시장사용분 · 대중교통이용분 40% ·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 · 현금영수증 ·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%)를 소득공제
 - *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
 - * 공제한도: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(총급여 7천만 원~1억 2천만 원 해당자 250만 원,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) 중 적은 금액. 다만,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(각각 100만 원 한도)

(-) 그밖의 소득공제

- ▶ **우리사주조합출연금** :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(연 400만 원 한도, 벤처기업 연 1,500만 원 한도)
- ▶ **고용유지중소기업 금모자** :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%를 소득공제(연 1,000만원 한도)
- ▶ **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** :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(연 240만원 한도)

♀ 과세표준

(×) 기본세율

(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소득공제 - 그 밖의 소득공제 +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)
 *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: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환산

과세표준	기본세율	기본세율(속산표)
1,200만 원 이하	과세표준의 6%	과세표준 × 6%
1,200만 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72만 원+(1,200만 원 초과금액의 15%)	(과세표준 × 15%) - 108만원
4,600만 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582만 원+(4,600만 원 초과금액의 24%)	(과세표준 × 24%) - 522만원
8,800만 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,590만 원+(8,800만 원 초과금액의 35%)	(과세표준 × 35%) - 1,490만원
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	3,760만 원+(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%)	(과세표준 × 38%) - 1,940만원
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	9,460만 원+(3억 원 초과금액의 40%)	(과세표준 × 40%) - 2,540만원
5억 원 초과	17,460만 원+(5억 원 초과금액의 42%)	(과세표준 × 42%) - 3,540만원

♀ 산출세액

(-)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

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

- ▶ **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** : 15세~34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 사람, 등록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(청년 5년간) 근로소득세 70%(청년 90%, 150만원 한도) 감면
- ▶ **근로소득세액공제** :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%, 초과분 30% 공제(74만원, 66만원, 50만원 한도)
- ▶ **자녀세액공제** : 기본공제대상(7세 이상, 7세 미만 취학아동) 자녀 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 이상(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) 출생·입양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70만원
- ▶ **연금계좌세액공제** : 퇴직연금 · 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%) ·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원)
- ▶ **특별세액공제**
 - **보험료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2%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%)**
 -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: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
 -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: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
 - **의료비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5%, 난임시술비는 20%)**
 - 기본공제대상자(소득 나이 제한 없음)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: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. 다만, 본인, 65세 이상자, 장애인,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,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
 - ※ 미용·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: 공제대상에서 제외
 - **교육비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5%)**
 -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·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: 전액 공제대상
 -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 없음)를 위해 교육기관(대학원 제외) 등에 지출한 교육비 : 취학전 아동 및 초·중·고생 1명당 연 300만원,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
 -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(소득 제한 없음, 직계존속 포함)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: 전액 공제대상
- **기부금 세액공제** :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

유형	세액공제 등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		이월공제
		10만원 이하	100/110	
① 정치자금기부금	근로소득금액	10만원 이하	100/110	-
② 법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)	10만원 초과	15%, 25%	-
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	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15%, 초과 30%		10년
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			-
⑤ 지정기부금(비종교단체)*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			10년

* 지정기부금(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)은 근로소득금액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- ▶ **표준세액공제** : 특별소득공제 · 특별세액공제 ·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
- ▶ **납세조합공제** :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를 세액공제
- ▶ **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** : ('95.11.1.~'97.12.31. 취득)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세액공제
- ▶ **외국납부세액공제** :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
- ▶ **월세세액공제** 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(연 750만원 한도)의 10% · 12% 세액공제

♀ 결정세액

(-) 기납부세액

(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· 감면금액)

- ▶ **주(현)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(전)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**

♀ 차감징수세액

(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) ※ 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 : 차액을 납부, 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 : 차액을 환급